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중화장실등의 설치·이용 및 위생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이라 함은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2. “개방화장실”이라 함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중 공중의 이용을 위하여 개방된 화장실 또는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3. “이동화장실”이라 함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이나 다중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4. “유료화장실”이라 함은 화장실의 설치·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을 말한다.
5.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 화장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자연공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
2. 관광진흥법 제2조 제6호·제7호·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중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제4호·제6호·제7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임시시장·상점가·전문상가단지
5. 도시공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6. 도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휴게시설
7. 철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의 역
8. 도시철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의 역
9. 항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시·군 또는 구의

조례가 정하는 시설

10. 유선및도선사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선장 및 도선장
11. 석유사업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12.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
13. 항공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
14. 공연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1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16.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편의증진 및 위생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공중화장실 등의 수급계획수립)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안의 공중화장실의 설치 또는 개방화장실의 지정 등 화장실 수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공중화장실의 설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장소 또는 시설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거나, 당해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에게 공중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중화장실등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거나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휴식시설·판매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공중화장실등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분뇨의 처리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법률에 의한다.

④그 밖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공중화장실의 관리) ①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자(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과 그 주변의 청결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공중화장실의 관리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개방화장실) ①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여야 한다.

1. 당해 시설물 또는 업무의 특성상 보안 또는 안전관리가 필요하여 일반공중의 출입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당해 시설물의 구조적 특성으로 다중이 이용하는 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당해 시설물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와의 협의를 거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방화장실을 설치한 시설물에는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개방화장실의 지정절차·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이동화장실)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당해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 대하여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②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유료화장실) ① 유료화장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개인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유료화장실의 설치·운영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15일 이내에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유료화장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유료화장실의 신고 요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④유료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에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 화장실등

의 설치기준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 관리기준 을 준용한다.

제12조(시설점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에 대하여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 정기점검과 필요시 행하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개선명령등)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가 제7조의 설치기준 또는 제8조의 관리기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명령·폐쇄명령·철거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금지행위)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중화장실등에 낙서를 하는 행위
2. 공중화장실등의 기물을 훼손하는 행위
3. 영리목적의 광고물을 표시 및 설치하는 행위
4. 그 밖에 공중화장실등에 오물을 방치하는 행위 등 위생적인 화장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시·군 또는 구의 조례가 정한 사항

제15조(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 ①공중화장실등의 설치·지정 또는 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군 또는 구에 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공중화장실등의 수급 계획수립
2. 공중화장실의 설치 또는 개방화장실의 지정
3. 유료화장실 및 이동화장실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중화장실등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보조금의 지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설치·관리비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7조(민간위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관리업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단체·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조례에의 위임) 이 법에 의한 명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중화장실 등의 유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9조(보고 등)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벌칙) 제11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료화장실을 설치·운영한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6조 및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명령에 불응한 자
2.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 부착의무를 위반한 자 또는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한 자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자

②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22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처분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처분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관리기준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새로이 설치되는 공중화장실등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공중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공중화장실로 본다. 이 경우 제7조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제7조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43조의2제2호를 삭제한다.

- 제정 2004. 1.29. 법률 제7129호